

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

제 정 2018. 07. 27.
개 정 2019. 02. 13.
개 정 2020. 03. 31.
개 정 2021. 07. 2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연구본부, 연구기획부, 행정지원부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연구원의 조직은 <별표 1>과 같다. 다만, 특정과제 연구 및 현안대응을 위하여 TF팀을 둘 수 있으며, 세부운영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연구본부, 연구기획부, 행정지원부의 하부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타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조직 및 사무분장

제4조(연구본부) ① 연구본부에는 특별연구조직으로 대도약정책지원단, 새만금연구센터,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, 전북학센터를 두고, 단장, 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보한다. <개정 2019.2.13., 2020.3.31.>

② 대도약정책지원단은 전북대도약을 위한 중점사업 연구 및 정책협의체 운영지원 등을 수행한다.

- ③ 새만금연구센터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책사업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의 조사·연구를 수행한다.
- ④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고, 연구지원 및 대중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. <신설 2019.2.13.>
- ⑤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는 전라북도의 경제 데이터 관리, 경제동향 분석 및 연구, 경제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한다. <신설 2020.3.31.>

제5조(연구기획부) ①연구기획부에는 기획소통팀, 연구지원팀을 두고, 팀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보한다. <개정 2021.7.28.>

②기획소통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7.28.>

- 1. 연구기획
- 2. 연구자문위원회 운영
- 3. 연구원 비전 및 발전전략수립
- 4. 홍보
- 5. 시군정책간담회 운영 <신설 2021.7.28.>
- 6. 도민소통 등 <신설 2021.7.28.>

③연구지원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이사회 운영, 규정 관리
- 2. 연구사업 운영지원, 경영평가 사업관리
- 3. 직원 및 연구과제 평가 관리
- 4. 경영평가 및 경영계획(중장기발전계획·사업계획·예산편성)
- 5. 도의회, 대내외 감사
- 6. 대외협력, 국내외 협력기관,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및 호남·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교류
- 7. 도민소통, 청렴도, 고객만족
- 8. 홈페이지 운영, 전산업무
- 9. 연구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과 관리, 자료실 운영
- 10.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출간
- 11. 정보보안, IT 인프라, 메일링서비스
- 12. 연구성과물, 대내외 자료축적 및 DB화

④각 팀의 분장사무는 연구기획부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행정지원부) ①행정지원부에는 총무팀, 회계팀을 두고, 팀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보한다.

②총무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직관리, 인사, 교육업무
2. 복무관리, 후생복지
3. 문서관리, 서무업무, 법인카드 관리
4. 노무관리
5. 청사, 시설, 차량 관리
- 6 구내식당 운영

③회계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출원인행위 및 출납, 결산
2. 연봉 및 총액인건비 관리
3. 제보험, 제세금 업무
4. 위·수탁 용역·공사·물품 계약
5. 자금 및 기금운용, 자산관리
6. 물품 구매 및 관리

④각 팀의 분장사무는 행정지원부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2.13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

부 칙 <2020.3.31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7.28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